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

김동훈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분단을 단지 통일과 대비되는 남북한 간의 '특수 관계'라기보다는 남한 내의 전쟁체제 준전쟁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분단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국가 내부에서의 평화와도 거리가 먼 상태다. 즉, 분단체제는 휴전, 즉 내전의 잠정적 중단 상태 혹은 준 전쟁 상태가 분단국가인 남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외부자(outsider), 즉 스파이뿐만 아니라 내부의 반대자나 저항세력까지 이 외부자 혹은 '타자'의 범주에 집어넣은 다음, 일상적인 폭력을 가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지배질서인지 알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분단은 초기의 남북한 인구이동, 한국전쟁 기의 월남과 월북을 거치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족분단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이렇게 분단된 가족들은 분단체제의 변경에 위치하게 되어 결국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은 단지 두 개의 국가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체제의 희생자들을 사회로 통합시켜 내는 일, 즉 남한 내의 통합과 평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분단, 국가폭력, 변경인, 냉전, 가족, 평화, 통일

우리 시대의 지배자들은 서로 간에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전쟁은 이제 지배집단이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며 전쟁의 목적은 영토의 정복이나 방어가 아니라 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오웬, 2003).

1. 머리말

1948년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남한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남북한의 분단은 우선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 대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남북한의 분단은 과거의 베트남, 독일, 예멘 등의 분단과 마찬가지로 지구적 냉전이 내재화된 것이지만, 한반도의 경우 1950년 6·25부터 1953년 7월까지 사실상의 전면전을 겪은 후 휴전상태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분단과 달리 한반도의 분단은 일상화, 제도화된 내전상태로 볼 수 있다.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는 통상적인 국가와 그 기능, 목표, 자원 동원 등에서 차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전쟁 승리를 위한 국민 동원과 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가장 중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의 남북한은 외적으로는 적대적인 대립과 경쟁, 그리고 간헐적인 대화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공존해 왔지만 내적으로는 강력한 국민동원과 통제 정책을 실시해 왔다.

북한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 분단국가 한국은 기본적으로 병영국가(garrison state), 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 방공(防共)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¹⁾ 이 점에서 한국은 대만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曾薰慧·藏汝興, 2007). 196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나 한국을 모델로 하여 설정된 개념인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양상을 지니기 이전에 이미 안보국가였으며, 발전국가는 곧 안보국가의 동원과 통제의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북한 역시 과거의 ‘유격대 국가’에서 최근의 ‘선군정치’의 기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는 안보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에

1) 라스웰은 폭력의 전문가(군인)가 상위에 있고, 경제 사회 생활이 체계적으로 전투력 아래에 위치에 있는 나라를 병영국가로 보았다(Lasswell, 1997). 한편 냉전하의 미국이나 한국은 국가의 자원을 안보에 집중 투여한 일종의 안보국가였다(Raskin, 1976). 한편 중일전쟁 후 일본은 전형적인 방공국가였고, 엄격한 좌익탄압, 전쟁 수행을 위한 국민총동원 체제 수립과 사상통제를 특징으로 하였다(미즈노 나오키, 2004; 기모토 타케시, 2010).

서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을 위한 내부의 동원과 통제는 경제 성장을 위한 동원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체제 내부의 반대세력을 적대시하였으며 자본주의적인 성장의 적으로 간주되는 노조활동, 노동쟁의에 대한 억압과 통제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분단은 민족의 재통일과 반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반대인 전쟁 상태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근대사회의 모든 국가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언제나 의식하여 군대, 경찰 등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합법적 폭력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원래 근대 국가 조직이 군대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힌체(Hintz)의 지적도 있지만(Hintz, 1975), 국가성(stateness)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바로 국가가 폭력기구를 대규모로 전면적으로 동원하는 상황 즉, 전쟁 혹은 전쟁 준비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구적 냉전체제 하의 분단국가인 한국은 비록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국가의 대외적 대내적 폭력성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제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계엄이 사실상 전쟁 상태에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폭력행사를 정당화해주는 법적인 장치라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사회안전법 등의 사상 통제법은 평시에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법이다(김득중, 2009). 한편 경찰의 사법적 기능 강화와 비대화, 사회의 병영화, 갈등의 폭력적 진압, 사법의 독립성 결여는 국가가 사실상 설득과 법이 아닌 폭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이자 장치다.

한반도와 대만의 분단은 지구적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로 인해 과거 식의 병영국가, 안보국가의 성격은 후퇴하고 이제 국가의 노골적 폭력행사는 드물어졌다. 특히 자본주의 정치경제질서가 정착되면서 이제 한국은 공안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 배후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일상화된 예외 상태(Schmitt, 2007; 아감벤, 2009)에서 점차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온 정상국가로 이행해 가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적대의 '체제'로 굳어진 남북한 분단은 과거에는 북한위협론에 활용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고,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운동을 ‘체제위협’ 세력으로 간주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조건이 되었지만, 지금은 ‘북풍’은 거의 설득력이 없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상징, 언술, 담론 등을 통해 한국정부와 미국의 노선을 비판하거나 안보 군사적 자극을 주장하는 세력을 ‘친북’, ‘종북’으로 낙인찍는 문화적 폭력의 방식으로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²⁾ 그리고 한국의 법과 제도, 억압기구, 정부의 공식 담론들은 여전히 대북관련 사안이 아닌 노사갈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갈등, 정치적 대립의 해결을 위해 수시로 냉전/분단의 논리를 동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논리 아래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충성을 계속 확인하려 하고 있으며, 때때로 공권력의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분단을 단지 통일과 대비되는 남북한 간의 ‘특수 관계’로 보기 보다는 남한 내의 전쟁체제 준 전쟁 상태로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외부인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국가 내부에서의 평화 유지와는 거리가 먼 상태인지를 부각시켜 보려 한다. 즉, 내전의 잠정적 중단 상태 혹은 준 전쟁 상태가 분단국가인 남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외부자(outsider), 즉 스퀘이뿐만 아니라 내부의 반대자나 저항세력까지 이 외부자 혹은 ‘타자’의 범주에 집어넣은 다음, 일상적인 폭력을 가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지배질서인지를 살펴보면서 통일은 이 폭력체제의 극복을 통한 남한 내의 평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2) 백낙청은 분단을 분단체제로 부른다. 남북의 분단은 단순한 이웃나라 간의 관계도 아니고, 냉전체제 만도 아니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나의 고리이며, 남북한 각각의 지배/피지배 질서에 의해 얽혀있는 구조라고 본다(백낙청, 1994: 13~48). 필자는 그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나, 그가 분단체제의 전쟁체제의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2. 구조적, 문화적 폭력체제로서 남북한의 분단

1) 폭력의 개념, 국가폭력, 그리고 분단의 폭력성

여기서 폭력이란 물리적인 폭력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갈통(Galtung)은 직접적(물리적·가시적) 폭력과 구조적 문화적(비가시적) 폭력을 구분하기도 했다. 직접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 즉 학살, 고문, 린치나 구타, 강제수용소나 감옥 유폐, 거주이전 제한, 사법절차를 거친 사형, 극히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 병이나 다른 요인으로 죽게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된다. 그에 따르면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란 불공정한 사회적 장치, 즉 파시즘과 권위주의와 같은 지배체제하에서의 권력의 독점, 그리고 계급·인종·남녀 간의 차별 등을 지칭하고, 문화적 폭력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환경, 인종주의와 반공주의 등을 지칭하는데, 직접 폭력은 이러한 구조 문화적 폭력 아래에서 자행, 정당화, 동기부여되기도 하고 직접 폭력이 후자를 강화하기도 한다(Galtung, 1975).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연좌제 등을 통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 각종 낙인찍기 등도 구조 혹은 문화적 폭력에 속한다. 부르디외(Bourdieu)는 상징폭력(Symbolic Violence)이라는 개념도 사용한 바 있는데,³⁾ 그에 따르면 사회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사회구성원들이 그것을 내면화하면 그것도 폭력이라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 혹은 위험분자로 간주하여 감시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직업 기회를 박탈하여 이들을 경제적 빈궁, 질병, 자살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체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던 국가는 민주화 이후 문화적 폭력, 상징 폭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이 두 폭력의 효과는 동일하다.

3) 부르디외가 말한 상징 폭력은 피지배자들이 착취와 지배를 오인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실천적 행위까지 포함한다(Bourdieu, 1977: 171~197; Bourdieu and Wacquant, 1993: 167~168). 그러나 국가의 폭력기구가 지배의 전면에서 활동하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오인 등 상징적인 측면은 부차화된다.

이러한 폭력이 국가의 공식 정책과 방침, 제도와 법, 이데올로기에 의해 저질러질 때 우리는 국가폭력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폭력’이라는 말은 사실 동어반복일 수 있는데 모든 국가는 폭력 수단을 독점한다는 전제 위에서 유지되고, 법과 사회계약 질서라는 것도 폭력 사용의 위협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Tilly, 1986). 국가가 노골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국가는 언제나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근대 국가의 건설과 운영이 전쟁 혹은 폭력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다.⁴⁾ 국가폭력의 주요 주체는 주로 군대와 경찰 및 민간 정보기관, 그리고 양 조직 내의 사찰기관이나 정보기관이다. 이들은 전쟁 혹은 평화 시에도 안보와 질서의 이름으로 주로 폭력을 지휘 명령한다.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부 그리고 언론도 국가 폭력의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기소하여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언도를 내려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는 폭력이다. 지난 시절 한국에서 권력의 입김아래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익으로 몰아 ‘사법살인’을 저지른 검찰과 사법부, 고문에 의한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이 조작한 간첩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 등이 그에 속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 검찰은 특정인을 재판도 받기 이전에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자로 몰아가 그의 구속을 정당화하고 그의 항변이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변론기회를 박탈했다. 과거 정권과 검찰의 입노릇을 했던 언론조차도 일종의 문화적 폭력 기관이었는데 최고권력자나 공안기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선전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정치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무고한 사람을 ‘정치범’, ‘빨갱이’로 낙인찍거나 매도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학교, 기업, 사회조직도 일종의 폭력의 대행자이다. 국가나 사회가 이들을 사회의 ‘외부자’로 추방하여 아무런 직업을 얻

4) 폭력은 예외상태가 아니라 근대국가의 형성의 기원이자 국가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Joas(1999) 참조 이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지탱불가능성을 강조한 슈미트나 영국자유시장경제와 파시즘의 동일성을 강조한 플라니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을 수도 없고 사회관계도 단절되어 경제적 반공과 소외로 고통 받다가 결국 질병이나 자살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문화적 폭력이 아니라 사실 직접 폭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가한 폭력(self-centered violence), 즉 자해나 자살도 사실 상 국가폭력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군대 내에서의 구타 등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물리적 폭력에 속하지만, 군대의 가혹한 명령체계, 조직문화, 가혹행위, 집단 따돌리기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국가폭력에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세계의 모든 폭력 희생 중에서 여전히 자살은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의 상당 부분은 국가나 사회에 책임이 있다.

폭력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깊은 고통과 상처를 입혀 그를 죽이거나 육체적 정신적 불구자로 만든다. 특히 극단적 적대체제로서 남북한의 분단은 가족 간의 의리와 정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가족을 원수로 간주해서라도 자신이 속한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인 충성을 바칠 것을 요구한다. 전쟁과 폭력이 대체로는 의도된 것이고 권력 작용이자, 지배의 방편인 만큼, 국가 폭력의 결과, 즉 그 피해의 고통과 상처는 당사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이웃,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폭력의 행사는 극단적인 형태의 ‘권력의 언어’이기 때문에 국가 혹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은 폭력을 통해 대상자만 복종시키려 하지 않고, 그것을 목격한 제3자나 사회 일반을 규율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랬듯이 국가 혹은 준 국가조직이 ‘좌익’으로 지목된 사람을 연행, 투옥, 고문, 학살을 가할 경우, 그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공포로 얼어붙게 하고, 사회관계에서 연대와 신뢰를 파괴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2) 냉전의 내재화, 전쟁체제로서의 분단

남북한 분단은 지구 차원의 냉전(cold war)이 한반도의 남북한을 지속적인

군사 이데올로기상의 지속적인 대립 상태로 만든 것이다. ‘냉전’이라는 개념은 국제정치, 역사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좌우 간의 국제적인 대립, 미소 간의 항구적인 전쟁준비 군비경쟁 상태, 핵개발을 통한 상호 대립, 혹은 열전(熱戰)의 반대말로 공식화되어 있지만, 냉전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 속한 각 나라의 국내 지배질서를 개념화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냉전하의 패권국가인 소련과 미국은 상대방과의 전쟁을 제도화 일상화한 반자본주의 혹은 반공국가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들 패권국가 아닌 냉전의 최전선 국가, 서유럽과 인접했던 동구 구사회주의국가들, 그리고 중국 북한과 맞대면한 대만, 남한에서도 냉전질서, 극우반공주의는 법, 제도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온 사회를 규율하였다.

냉전도 하나의 전쟁 즉 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는 물론 한 국가 내의 정치 이데올로기, 문화 영역에서도 사회집단을 ‘적과 나’로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Ron, 2001). 기든스(Giddens)가 말하는 냉전하 지구정치하에서 특정 국가가 처한 위치, 적과의 대치전선에서 위치, 특히 미. 소가 충돌하는 지구적 냉전 전선에의 근접성은 해당 국가의 지배 질서와 사회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Giddens, 1987). 동아시아에서의 한 반도와 유럽에서 그리스, 체코 등이 그럴 것이다. 한편 냉전의 정점이었던 1950년대에 자본주의 진영의 중심 국가인 미국과 냉전의 전선에 위치한 한 국에서 나타났던 매카시즘과 반공주의는 바로 외부의 적인 사회주의 진영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내부의 반정부세력이나 체제비판 세력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동아시아에 냉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미군이 오키나와와 남한에 항구적으로 주둔하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두 번의 열전을 치르게 되자, 전시와 평화 시기 구분이 애매해지고, 전쟁을 위한 동원이 일상화되었다.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그 하위 파트너인 일본과도 달리 분단국가인 대만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 있었다. 만성적인 계엄(대만)과 일당독재, 두 차례의 학살(4·19와 5·18)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사주의(한국)가 지속되었다.

자본주의 진영의 냉전, 반공주의는 이념적으로 친자본주의, 반사회주의

를 내용으로 하지만, 전후 독일과 달리 일본은 1945년 이전의 천황제를 청산하지 못했고, 식민지였던 한국에게 반공은 곧 총독부의 파시즘적 지배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즉, 탈식민지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전후의 과제가 지구적 ‘반혁명’ 이데올로기인 반공에 압도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혁명세력은 물론 탈식민(post-colonial) 세력 일반에 대한 폭력의 행사를 반공의 이름으로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일종의 구조적 문화적 폭력체제로 볼 수 있다. 특히 1972년에서 1987년까지의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전형적으로 나타난 ‘전쟁 위기를 명분으로 한 지배’, 특히 계엄선포, 박정희의 10월 유신과 긴급조치는 나치하의 독일이나 같은 시기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에서 원래 나타났던 것들이다.

그러나 냉전 이후 세계의 모든 분단된 국가들이 통일 자체를 목표로 하거나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독일의 분단은 두 개의 국가, 더 나아가 두 개의 민족이라는 공식 인식 위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북한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영토는 ‘수복’되어야 할 빼앗긴 지역으로 간주하였으며, 상대방의 주민은 ‘귀순’되어야 할 존재였다. 그래서 국제정치적 압력에 의해 분단이 강요되었던 독일의 경우 냉전의 해소와 함께 분단이 자동적으로 극복되었으나, 냉전체제 수립 이전부터 내부의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한국의 경우는 냉전의 해소가 분단의 해소, 혹은 남북 평화체제의 수립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적과 나는 일차적으로는 휴전선(DMZ)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지만, 남북 각 정부는 내부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 언제나 전쟁 상태를 유지하였고, 남한에게 그것은 슈미트와 아감벤이 말하는 ‘적과 나’의 대립구도,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만성화하였다(Schmitt, 2007; 아감벤, 2009).

3) 분단하 폭력 피해자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인구 이동, 전쟁을 겪은 후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가 내부의 모든 주민을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단체제하에서 특정 범주의 사람들은 구조 문화적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국가나 정권의 위기가 닥칠 경우 곧바로 연행, 구금 등 물리적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국가폭력의 대상자는 우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으로 분류된 사람, 그리고 ‘적’에게 동조한 사람, ‘적’의 의심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은 분단된 국가 체제 외부 혹은 변경에 존재하는 ‘타자’들이다. 이들 변경인들은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었거나 ‘2등 시민’ 정도의 자격만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김동춘, 2006). 지금까지 남한에서 국가폭력의 표적과 대상이 된 ‘타자’를 범주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 양측으로 흩어진 가족은 정치적 분단을 넘나들면서 가족 유대를 지속할 개연성이 있었고, 이산가족이 없는 보통의 국민 중에서도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정치경제체제, 즉 국가보다는 적대하고 있는 다른 편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친화력을 느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의견 타의견 휴전선을 넘나들게 되어 상대 체제를 경험하면서 그것에 매력을 느꼈거나, 상대의 교육과 선전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내심 지금 살고 있는 체제에 회의를 품으면서 ‘충성’을 철회했을 위험성도 있었다. 즉, 적대하는 상대방에 충성심을 가진 국민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가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위협인물, 혹은 스파이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었다.

간첩, 즉 스파이는 냉전체제하의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전쟁국가, 방공국가, 파시즘에서 전형적으로 범주화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분단하의 간첩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월남 월북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북한에 일부 가족 구성원을 둔 이산가족은 간첩으로 침투한 사람과 가장 손쉽게 접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북한을 ‘조국’으로 인정하고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이 있는 가족은 모두가 ‘적’과 내통할 위험이 있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된다.

즉, 분단은 상당수의 주민들에게 곧 ‘가족의 분단’이므로 가족 간의 유대와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요구가 모순적으로 교차한다. 특히 안보국가, 병영국가인 분단국가는 가족 간 혈육의 정을 배신하고서라도 국

<그림 1> 분단체제하 남한의 외부자들

<p>정치적 적, 이적행위자</p> <p>-----</p> <p>간첩, 남한 내 이적행위자 (반체제 활동가) 최고 권력자의 중요한 정적 민주화 운동가</p> <p>잠재적 적 (비시민 혹은 2등 시민)</p> <p>-----</p> <p>한국전쟁기 피학살자 유가족 한국전쟁 전후 월북자 유가족 여타 이산가족 재일교포 (조총련계) 남북어부 북과공작원</p> <p>자본주의 질서의 위협세력</p> <p>-----</p> <p>폭력배, 부랑자 노동운동가, 빈민운동가</p>
--

가에 충성을 바칠 것을 강조해 왔다.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의 조항이 그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설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적’의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유일한 법 조항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가족 간의 정에 이끌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들까지도 위험한 존재로 취급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간첩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족간첩이 바로 분단하 간첩의 특징이다.

앞의 그림을 보면 우선 ‘정치적 적’과 ‘잠재적 적’은 분단체제하 남한의

가장 전형적인 ‘외부자’들이었고 가시적으로는 ‘정치적 적’ 관련 사건이 큰 정치적 이슈였다. 독재자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단순한 적어도 스파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승만은 조봉암을 사형시켰고, 박정희 정권도 김대중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박정희 정권 이후 계엄이나 긴급조치 등 국가의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단순한 반정부인사나 민주화 운동가, 통일운동가들도 반체제 인사로 간주, 혹은 조작되어 고문과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박정권하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에 대한 전격 처형이 그것이다.

한편 이들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은 없어도 과거에 적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의 가족, 월북자 가족, 납북어부, 재일동포 등 분단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사람들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세력 혹은 잠재적 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분단체제의 변경인 혹은 외부자들이라 볼 수 있는데, 국민으로서 자격은 부여되어 있으나 언제나 사찰의 대상이 되고, 유사시 예비구금당하거나 심지어는 간첩사건으로 조작되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독일인들이나 다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외부자로 만들었듯이, 냉전 자본주의하에서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외부자가 된다. 전자의 경우 인종주의가 주로 외부자를 구획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후자의 경우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된다. 유대인이 독일 사회의 해충의 은유로 묘사되었듯이 공산주의자도 국가의 해충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공산주의나 모두 국가나 사회를 해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 음모적 시각은 지금까지 남한의 수사정보기관 담당자들이 대체로 견지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체제로서 냉전반공주의 체제는 노조활동이나 파업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가들도 정치적 반대세력 이상으로 적대시되었다. 한국에서 노동문제는 언제나 공안 사안이 되었고, 대규모 사업장 파업에는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다. 그리고 재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빈민운동가, 혼란기에 저항을 할지도 모르는 부랑자, 폭력배들도 위협세력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5·16 쿠데타 직후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집중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물론 국가가 이들 변경인들에게 행사한 폭력 모두가 전쟁, 남북한 분단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냉전하의 자본주의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폭력 일반과 분단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폭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는 앞에서 정리한 한반도 분단의 성격, 즉 준전쟁, 일상화된 내전 혹은 극우반공주의 지배체제와 가족의 강제적 분리로서 분단을 주목하면서, 분단에 의한 폭력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것만 직접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분단구조하 국가폭력의 유형과 특성

1) 직접 폭력

(1) ‘분단된 가족’에서 간첩으로

분단은 가족과 친척 구성원을 남북한과 일본에 살도록 강요하였으며, 북한과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이 남한의 가족과 접촉을 할 경우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표적이 되었다. 군사독재정권은 이들의 회합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였다.

분단은 대량의 월북자 월남자 가족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휴전, 냉전, 군사대결체제로서의 분단은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변화시킨다. 즉, 민족 분단은 가족 간의 유대가 국가의 경계를 넘게 만들었고, 분단 지배질서는 남북, 혹은 남과 일본에 흩어진 가족 간의 유대도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검열을 하고 판단을 내린다. 여기서 북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은 일단 의심과 사찰의 대상이 되고, 북에 올라간 가족이 자의의 월북일 경우, 남의 남은 가족도 같은 부류로 취급된다. 이산가족의 법적인 정의는 실향 시민(displaced civilians)으로 중립적인 존재이지만, 휴

전 냉전체제하에서 이산가족은 ‘납치된 자’로서 국한되고, 오직 ‘납치된 자’만이 국가의 관심과 보호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남은 가족들까지도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납치된 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월북자, 한국전쟁기 의용군 입대자, 미송환 포로 등의 가족들은 공식적으로 법적인 사망자나 ‘행불자’로 신고하였다(김귀옥, 2007).

1960년대 이후 ‘간첩사건’의 상당수는 바로 분단 즉 이산가족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전쟁 전후 월북을 했거나 의용군 입대 등으로 북에 거주하던 가족 중 한 사람이 간첩으로 월남하여 가족을 만난 일이 빌미가 되어 가족 여러 명이 간첩으로 체포되거나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로 체포된 일이 바로 그것이다.⁵⁾ 물론 남북 어부 중에서 남으로 되돌아와서 간첩으로 체포된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문을 당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존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분단은 재일교포들을 이중, 삼중의 이산가족으로 만들었다. 재일동포 중 일본에서 월북을 한 경력이 있거나, 가족 중 일부가 일본에서 북으로 간 경우, 이들은 남한에 방문해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 재일동포의 98%가 남한 출신이지만, 그 반수는 조총련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높았다(전명혁, 2011). 재일동포라는 존재는 애초에는 일제 식민지가 만들어냈고 이들을 일본에서 번 돈을 갖고 귀환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일본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박탈한 주체는 일본이지만, 이들을 남북한의 또 다른 변경인으로 만든 것은 분단이었다. 즉, 재일동포들은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에 의해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방인이 되었으며, 공산당이 합법화된 일본에서 거주하였고 북한의 내왕은 빈번했기 때문에 남한 당국의 눈에는 ‘잠재적 간첩’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1970년대는 재일동포 사이에서 한국독재정권을 미워하고 북한에 동정적인

5) 1982년 송씨 일가에게 씌워진 간첩의 울가미가 대표적인데 무려 28명의 가족 구성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통을 겪었다.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송기준 씨”, 《한겨레 21》, 2007.11.16.

분위기도 있었으며, “지각 있는 고등학생으로 마르크스주의 책을 안 읽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⁶⁾이었다고 할 정도로 남한에 비해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재일동포 학생들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모국수학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 서울대에서 재외국민연구소가 문을 열어 매년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정원 외 입학의 허용 받게 되면서 월북 경험이 있거나 조총련 계에 속했던 재일동포 학생들이 감시 대상이 되었고, 이후 간첩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 과거사위의 조사에 의하면 1970~1980년대 간첩사건은 966건이었고, 그중 재일동포 일본관련 간첩사건은 319건이고 그중 1980년대에 발생한 사건이 285건이다.⁷⁾ 결국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 형제 친지를 만나는 것이 국가보안법, 반공법상의 ‘회합 통신죄’가 되고 주고받은 여비가 ‘금품수수죄’로, 대화한 내용이나 전달한 일간신문이 간첩활동이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식민지가 곧 분단으로 연결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가족의 분단을 가져옴으로써 분단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다.

(2) ‘정치적 적’에 대한 고문, 테러, 살해

반체제 활동가들에 대한 테러, 고문, 실종사망 사건 등은 과거의 과시즘과 1970, 1980년대 남미 등지의 군사독재하에서 흔히 나타난 현상이지만, 분단하 한국에서는 북한을 지지, 동조한 사실이 있거나 실제로 유학 중 북한에 갔다 온 경력이 있거나, 더 넓게는 남한 자체를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사람 모두가 그 표적이 된다. 1960년대 이후 각종 간첩사건,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유럽거점 간첩사건(동베를린 사건) 1970년대의 ‘인

6)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들 …… 모국 사랑한 죄밖에 없어 — 재일동포 간첩사건 김정사 씨 인터뷰”, 《한겨레》, 2011.6.13.

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의혹사건 조사보고서』 참조.

혁명당 사건, 1970년대 이후 남북어부 ‘간첩사건’, 기타 각종 조작 간첩사건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조작 및 비정상적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당하거나, 고문을 받던 중 사망(최종길 교수)하거나 장준하 등의 경우처럼 의문사당하거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김근태 전의원)들을 거론할 수 있다.⁸⁾

이들 ‘이적행위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대체로 단순 반정부인사, 통일운동인사, 일제 시기나 해방 후 과거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활동 경력이 있던 사람, 유럽에 유학하거나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요 대상인데 이들은 분단하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정치적 ‘변경 지대’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즉, 잠재적으로 국가의 사찰과 의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정치적 의도하에 간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체제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고문과 테러는 1972년 유신체제 이후 주로 감옥에 수감된 좌익수가 표적이 되었다. 과거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북한에서 납과된 간첩 출신인 이들 사상범은 북한을 조국으로 간주하면서 남한의 체제를 부인하는 확신범들이었다. 1973년 직후부터 일종의 남은 ‘빨치산 잔당 소탕 작전’이 감옥에서 재기되었는데 그것이 살인적인 전향공작이었다. 군사정권하의 감옥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이지만, 1970년대 사상범 수감 감옥은 그 자체가 무한대의 폭력이 마구잡이로 행사될 수 있는 법 외의 공간이었다. 감옥에 들어와 수십 년의 형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요구받으면서 매일 구타와 폭력을 당했다. 깡패들이 곤봉, 수정, 로프 등을 갖고서 방에 들어와 이들을 마구 잡이로 때렸다. 훌쩍 벗겨 놓고 몽둥이로 패거나, 대꼬챙이로 손가락 끝을 찌시거나, 창문 열어놓고 팬티만 입고 꿇어앉아 있는 ‘동태고문’을 비롯한 온갖 고문이 가해졌다(김진환, 2011: 161).

8) 1970년대 이후 1992년까지 약 80건이 넘는 각종 의문사 사건도 모두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들은 확산범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어려운 존재들이었다. 박정권은 이들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이미 감옥에 갇혀 있을 뿐더러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러한 잔인한 폭력을 가했다. 즉,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잊혀진 존재이며, 공간적으로 격리된 곳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는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들에게 무한대의 폭력이 가해진 것이다. 20세기 한반도에서 그리고 이 시기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노골적 학살을 제외하고는 권력의 잔혹성이 이 보다 더 심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굴복시킬 수 없는 이들의 존재적 특징과 정치, 사회, 물리적 격리가 이들에 대해 무한대의 폭력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출옥한 이후에도 사회안전법의 족쇄에 걸려 또다시 2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1990년 2월 11일 출옥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 동안 유폐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김선명 씨는 51년 유엔 군에 포로로 잡힌 후 무려 4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세계 최장기수였다. 만델라보다 무려 16년 동안 더 긴 기간 감옥에 있었다. 40년 이상 감옥에서 산 장기수들도 7명이 넘는다. 분단에 의한 국가폭력의 상징적 사건이 바로 장기수의 존재, 장기수에 대한 살인적 전향공작이었다.

2) 구조적 폭력

(1) 사찰과 감시

이상화된 전쟁체제하에서 적과 내통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찰과 감시가 이루어졌다. 사찰과 감시의 대상은 우선 앞에서 분류한 이산가족, 정치적 적, 잠재적 적,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 관계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1946년경부터 일제의 경찰 조직이 부활되어 일제시대부터 지속되어오던 ‘요시찰인(要視察人)’ 등 사상범을 감시 관리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공식적으로는 1950년 한국 전쟁기에 주민 사찰, 감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⁹⁾ 처음

에는 한국전쟁 기 부역자, 피학살자 가족들이 주 대상이었으나 이후에는 월북자, 재일교포 가족들 둔 사람, 월남자 등 분단국가의 변경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었다. 사찰과 감시는 경찰 사찰과(계), 군 방첩대(CIC)가 주로 담당하였고, 군사정권 수립 후에는 경찰, 군, 민간(중앙정보부)의 세 조직이 각각 별도로 움직였다. 이들 조직은 도청과 감청, 사건 조작, 폭력과 고문, 협박, 부인 등 통상의 범죄조직과 유사한 활동을 했다. 이들 기관의 활동은 대체로 불법적이었으나 모두가 북한의 위협,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사찰활동은 계속되었다. 1990년 2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사찰카드를 만들어 민간인까지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1994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도 민간인 사찰카드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후 김영삼 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보기관들도 사찰카드를 폐지하고 더 이상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경찰이 안기부의 지적으로 각계 인사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인물자료와 단체자료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를 기무사, 안기부, 청와대 등에 설치해 주고 각종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정보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의 자체 승인하에 감청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정원은 2003년 한 해 동안 무려 7,281건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모든 활동은 미국 등 냉전체제하의 다른 국가들이 시행한 사찰과 유사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부역자나 피학살자 가족, 월북가족이나 월남가족 등이 특히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하에서는 관찰 경찰의 계속되는 방문과 동향 점검, 심지어 동네의 이웃을 정보원으로

9) 남한 정부의 사찰은 일제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경찰은 개인별 요시찰인 카드를 만들어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기록했는데, 그 명칭도, 부역자 카드, 요시찰인 카드, 신원기록카드, 대공비인다 등 다양하였다(한성훈, 2012).

두고 생존기간까지 계속 감시한 점 등 더 억압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분단체제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사찰과 감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기무사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고, 권한을 갖지 않는 총리실이 정치인과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불법사찰의 명분은 대공업무 차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렇게 사찰과 감시가 지속된 것도 분단이 국정원, 기무사 등의 불법 활동을 계속 정당화해주었기 때문이다.

(2) 연좌제

본인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도 부모 혹은 가족의 죄로 인해 처벌을 당하는 것이 연좌제인데,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연대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전통사회에서 특별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자인 정범과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은 형사상의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연(緣)좌제와 “인민을 인오로 묶어 인오 내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의무를 지게 하여 의무를 위반한 때에 인오에게 형을 가하는” 연(連)좌제가 있는데(윤재수, 1983: 89~105), 이 두 형벌은 공식적으로는 갑오개혁 당시에 폐지되었으나 일제 식민지하에서 사실상 부활하였고, 해방 후 분단체제하에서 그대로 지속되었다.

월북자, 한국전쟁 전후 좌익 활동가의 가족, 한국전쟁기 피살자의 가족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 피학살자의 가족들은 가장 대표적인 연좌제 피해자들이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1980년대까지 국가로부터 일상적인 사찰과 감시, 그리고 취업과 직업선택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구조적 폭력이 시달려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내부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피해 양상은 다음과 같다.

10)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어떤 기록은 1975년에서 1994년 해당자가 사망할 때까지 20년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다(한성훈, 2012: 430).

<표 1> 국민보도연맹사건 유가족의 연좌제피해 사례

연좌제 피해유형	301(명)	100(%)
공무원 임용시험	38	13
사관학교 등 각종 입학시험	35	12
국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직 또는 승진	20	7
군경찰에서 승진 등에 불이익 처분	24	8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좌절	43	14
일상생활에서 감시	50	17
각종 신원조회	91	30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9a: 624).

이러한 구조적 폭력하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자살로 생을 마치기도 했고, 정신적 고통, 극심한 가난, 병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분단은 이처럼 내부의 위험세력에 대해 가족 연대책임 제리는 전근대시절의 통제방식을 부활 지속시켰고, 그것은 법이 아닌 제도 와 관행으로 작동하였다.

(3) 강제 징집,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혹은 자살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징집은 사실상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징병은 분명히 식민지 권력이 강요한 ‘총알받이’ 모집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하에서의 징집은 분명히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시민권 부여’의 측면을 갖고 있었다. 즉, 전통사회와 식민지 시기까지 신분적 차별을 받았던 농민들이 국민국가의 군인이 되어 비로소 시민의 자격을 얻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진행된 강제 징집은 대단히 폭력적이었고, 특히 전선이 교착되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징집이나 노무동원은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실종, 불구, 사망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로부터 어떤 위로나 보상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정치적 이유로 강제징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주로 학생운동 관련자들이 강제징집되어 ‘녹화사업’의 이름으로 사상 교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82년 9월부터 1984년 11월 폐지시까지 보안사령부에서 교육대상자로 분류, 관리한 인원은 429명이었으며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265명이라고 발표했으나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결과 실제 강제징집 대상자는 1,152명이었고, 녹화사업을 실시한 사람은 정상입대자 등을 포함하여 1,192명이었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139).

일제 식민지 전통을 가지는 한국의 군대는 이미 한국전쟁 시기부터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 국가가 법에 의거하여 청년들을 징집한 다음, 중공군의 남침으로 인해 급히 수십만 명의 군인을 수용시설, 식량과 피복, 의료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남쪽으로 이동시키다가 이들 상당수를 사망케 한 국민방위군 사건으로부터 드러났듯이 당시 군인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군대서 맞아 죽어도 어디 항의할 데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박정석, 2003: 175). 적어도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한국의 군대는 인권의 기준이 미칠 수 없는 원시적 폭력의 영역이었다.

군의문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53년 휴전 이후 2005년까지 약 6만여 명의 군 입대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였으며 그중 1만 2천여 명의 군인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철, 2006). 이승만 정권기는 1년에 1,500명에서 2,500명 정도, 박정권 시기는 평균 1,3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죽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평균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죽었다. 군 피해자들, 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장병은 연간 1천여 명으로 2001년에는 1천 57명, 2002년 915명이었다.¹¹⁾ 가족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청년 아들들 6만여 명이 전투상황도 아닌 시기에 군에 가서 목숨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불구자가 된 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자살자 중 정말 자살한 것인지, 타살을 자살로 처리한 것이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군은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타살

11) 《연합뉴스》, 2003.9.18.

의혹이 현저해도 외부의 접근은 차단한 채 자살로 종결처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백히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자살하게 된 이유가 군 복무와 연관성이 깊다고 할 때, 그것은 구조적 폭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국 군내 내의 구타, 일차려, 언어폭력은 이들을 자살로 이끄는 대표적인 관행이다.

실제 군내 자살자는 동년배 자살자의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군의 유지가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 폭력에 의한 자살이라고 봐야 한다.¹²⁾ 징병제의 강제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대한 군인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실제 이들은 거의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결국 구타, 인격모독 등 부당한 대우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게 된다.¹³⁾ 군 사망을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보는 이유는 만약 한국에서 남북한 대치상황이 완화되어 현재와 같은 규모의 군대 유지가 불필요해졌다면, 그리고 군대가 더욱 민주적이고 인간적이었다면 이러한 사고사나 자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낸 책임이 있고, 자살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 북파공작원에 대한 폭력

북파공작원으로 알려진 육군첩보부대(HID) 요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넘나들었던 사람들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그 존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보사가 발표한 북파공작원 사망, 실종자 수는 7,72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체포되어 살해되었거나 남북을 오가다가 사망했을 것이다. 그중에는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고,

12)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군인의 자살은 ‘안보재해’로 봐야 한다는 시각까지 등장하였다. 박종덕, 2007 참조.

13) 2011년 육군 훈련소에서 목숨을 끊은 정보 훈련병은 중이염을 호소하며 외진을 요청하였으나 진료소 밖으로 쫓겨나고 소대장으로부터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걸 생각하지 마라는 육설을 들은 뒤 자살을 했다. 《연합뉴스》, 2011.5.30.

1968년에 발생한 실미도 사건처럼 훈련도중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탈출했다가 전원 사살당한 경우도 있다. 서해 도서에서의 훈련이 너무나 가혹해 절벽을 만나면 다이빙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국가는 이들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에게 특별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군대면제, 전과기록 말소, 생계비 지급까지 약속했으나 돌아온 후 국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군기파자로 몰려 군복무까지 한 공작원도 있다(이규정, 2002: 326~331). 애초부터 법적 근거 없이 인간 병기로서 북파공작원을 양성해서 월북시켰기 때문에 국가는 철저히 이들을 이용하고 책임져주지 않았다. 국가는 두세 번 써먹고 가치가 없으면 버렸다고 한다. 심지어는 침투 수송 중에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90퍼센트는 북파 후 북에서 실종되었거나 사망했고, 돌아온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고 살아남은 사람도 부상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사실상 국가는 이들 전원을 소모품으로 사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심문규라는 북파공작원은 북한에서 역으로 포섭되었으나 남으로 돌아온 이후 곧바로 자수했음에도 군은 위장 자수로 의심하고 그를 심문한 이후 사형시켰다. 당시 북파된 사람들 중에서 북한에서 포섭이 되었다가 남한에 내려와서 자수를 했는데도 군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입수, 간첩검거 등으로 재차 활용한 다음 다시 북파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다시 북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그들을 위장자수했다고 혐의를 씌운 다음 사형시키는 일도 여러 건 되었다(진실화해위원회, 2008: 57). 즉, 그들이 자수했음에도 북한에서 습득한 정보를 빼낸 후 죽인 이유는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국가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고, 북한으로 보내면 다시 북한의 품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심지어는 북파공작원이 이북에서 사망했는데도 그가 이중간첩이라고 남은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례도 있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b: 210).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을 받다가 죽거나, 북한에 공작원으로 투입되어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물론 생존자까지도 분단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라 볼 수 있다.

3) 문화적 폭력과 사설폭력

1987년 이후 한국의 국가는 직접폭력보다는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업에 의한 사설 폭력을 묵인하는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문화적 폭력은 주로 반공주의 신화에 기초하고 있다. 신화와 터부는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분단체제하의 신화는 한국전쟁기 혹은 분단하에서의 반공투쟁의 사건에서 만들어지고, 터부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 신화는 외부의 집단을 정의하고, 내부집단에게 공통의 기억을 주입하며 충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신화와 그것을 공식 담지, 표방하는 세력은 법 이상의 위세를 가진다. 한국전쟁기 공산군에 맞서 싸운 육탄 10용사의 투쟁이 신화로 만들어 지거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이승복이 신화화되면 그 이면에는 학살되어야 할 ‘공산당’도 함께 존재한다. 즉, 신화는 현실의 진면목을 은폐하고 파피 테러 활동을 정당화하기도 한다(허시, 2009). 즉 반공주의의 신화는 남한과 북한을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보고, 공산주의자에 대한 공격과 테러를 정당화한다.

분단 하의 문화적 폭력은 반공주의에 의한 ‘빨갱이’ 낙인찍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로 북한이나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남한 내의 좌파 경향에 대한 억압을 가한다(권혁범, 2000: 141). 민주화 이전에는 공안 기관, 정치가들이 주로 반복 좌파 낙인찍기 선전, 담론을 주도하였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과 언론, 정치권의 합작에 의해 주로 진행되었고, 특히 언론이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스테레오타입, 낙인찍기 혹은 특정인을 비인간화하는 것은 주로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허시, 2009). 언론이 특정인을 빨갱이로 몰아가면,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혐의를 잡아 내어 구속을 한다. 즉, 한국에서 반공주의라는 문화적 폭력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옥과 해고 등 물리적 처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

래서 언어는 단지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살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신체적 고통, 정신적 파괴를 유도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특정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대상자는 자살을 택하게 될 경우 그의 자살은 사실상 타살의 성격을 지닌다. 설사 물리적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언론의 낙인에 의해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고립되고 직장을 잃는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사망한 것이 된다. 민주화 이후에 문화적 폭력은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한완상 전(前)부총리, 강정구, 최장집, 송두율 교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군사정권 시절 빈번한 일기기는 하나 노동조합 간부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반공 표어나 선전의 영향을 받아서 반공주의 신념을 갖게 된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고발을 당하면 나중에 지목된 사람이 설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공민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직장을 잡지도 못하게 된다.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정신적 불구자가 되기도 한다.

언어 즉 이름짓기와 이미지 만들기는 사회관계의 질적 측면을 드러내 준다. 한국에서 ‘좌익’이라고 할 때 보다 ‘빨갱이’, 혹은 ‘친북’, ‘중북’ 인사라고 부를 때, 지목된 사람의 존재나 위치가 달라진다. 이미지는 말과 수반된다. 색깔 상징주의는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검은 색, 붉은 색은 흰색 푸른색에 비해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그렇게 지목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어도 좋은 존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경찰이나 공권력의 노동자 파업이나 철거민의 저항에 대한 진압 행동 역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화의 정도에 따라서 강도가 좌우된다. 노동자의 파업이 ‘빨갱이의 행동’, 중북 행동으로 불리면, 그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성도 더욱 강해진다. 문화적 폭력은 언제나 물리적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반공주의가 미국 등 냉전체제하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반공주의와 다른 점은 반공주의가 거의 유사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공산주의를 절대악, 금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치적 이견조차도 ‘좌익’,

‘친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반공주의가 종교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그 금기와 터부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폭력성의 정도도 더욱 강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금기가 많이 무너졌다. 그러나 학교 군대 등 중요 사회조직은 물론 기업 등에서도 반노조, 친자본의 논리의 형태로 살아남았으며 미시 사회를 규율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반공이 이제 ‘중북’의 담론으로 연장되면서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를 부추기는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¹⁴⁾

한편 1987년 이후에는 노조활동이나 철거투쟁에 대한 사설 폭력이 더욱 빈번해졌다. 한국에서는 정부수립 후 거의 반세기 동안 헌법상 보장된 노조활동이나 노동쟁의가 실제로는 수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노조설립 자체가 법, 행정 조치에 의해 제약되었고, 모든 쟁의는 사실상 불법쟁의로 간주되었으며, 제3자 개입금지법 등 반노동법이 존재했다. 1987년 대투쟁 직후에는 대규모 사업장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법 제약은 크게 완화되어 이제 노조설립과 노동쟁의는 합법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처럼 보이고, 국가 기간산업이나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도 거의 드물어져서 공권력이 직접 투입되는 일도 드물어졌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 국가의 억압과 구사대의 폭력은 사라졌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사설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백주에 파업현장을 유혈이 낭자한 이수라장으로 만들고 은밀히 노조파괴 공작을 지원하는 일이 빈번해 졌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이해가 곧 국가의 이해가 되었고, 그것이 관료집단의 이해와 깊이 결합되었다. 우선 모든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이 이 용역폭력에 직접, 간접 이해관계로 연관되어 있다.

14) 국정원이 만든 지하철 광고에는 “잘 보면 보입니다”라는 표어를 써서 단순히 간첩뿐만 아니라 좌익 일반에 대한 사회적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좌익 사범’이라는 표어를 지하철에 게시하여 ‘타자’와 ‘우리’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

5. 결론

폭력은 지배의 도구이자 권력행사의 한 방법이고, 국가폭력의 강도와 빈도는 권력관계를 현상화한다. 국가폭력의 행사와 그것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상처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 대중의 이의제기나 저항 가능성,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시민사회에서 비판적 대안적 담론의 등장가능성은 이견을 모두 적으로 낙인찍기 때문에 정치적 스펙트럼의 확장까지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폭력은 폭력행사 시점의 권력관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오랫동안 권력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국가폭력은 기성 지배질서의 유지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분단 아래에서의 국가폭력은 분단체제의 한 결과이자 현상이지만, 동시에 분단을 유지 강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에 물리적 폭력은 드물어졌지만, 구조적 문화적 폭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반공주의는 이제 반복 이데올로기로 남아서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파시즘 치하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남미나 스페인의 군사독재하에서 국가 테러는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1945년 이후 모든 분단국가에서 이러한 국가 테러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단이 일상화된 내전의 성격을 지녔던 대만이나 남한에서는 이러한 공공연한 국가 테러나 폭력, 고문, 반공 선전이 자행되었다. 대만은 만성적 계엄이 남한은 국가보안법, 반공법이 이러한 국가테러를 정당화한 법제적 장치로 존재하였으며, 이들 국가가 냉전의 전선에 위치함으로써 반공주의는 이러한 국가 테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한반도의 민족 분단은 무엇보다 가족분단을 야기하였다. 정치적 공간적 구분으로서 분단은 가족의 강제적 이산을 수반하였고, 이산된 가족은 국가의 사찰, 감시의 표적이 되었다.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가족을 만난 사람들, 그 경계가 생기기 이전에 민족해방,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 경계가 생기기 이전인 식민지 시기부터 일본에 거주했던 사람들(재일교포와 그 자손들)은 모두가 분단체제 변방에 선 경계인들이고, 이 경계인들은 종종 지

배제제 유지를 위한 먹잇감, 즉 간첩조작의 희생양이 되었다.

결국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은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분단 하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은 바로 국가의 폭력행사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은 바로 남한 내에서 ‘적’, ‘2등 시민’으로 취급당했던 사람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것은 폭력의 상처로 침묵하게 된 사람의 말문을 열고, 그것을 통해 남한의 시민사회 일반을 활성화시키는 일과 같은 궤도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존재하는 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은 남북한 간의 적대라는 구조적 조건 아래 약간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분단이 식민주의의 연장이라면, 분단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대면하는 일은 곧 식민주의의 청산 문제와 같은 궤도에 있기도 하다. 갈통이 말한 적극적 평화는 남북통일로 한 번에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전 혹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일이다. 통일은 남한 사회 내의 폭력기구의 제거, 폭력을 정당화했던 법의 제거를 반드시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2.10.25 접수; 2012.12.1 심사; 2012.12.5 채택)

참고문헌

- 강정구. 2002,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 국방부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 권명아. 2006, 『생활양식과 파시즘 문제』, 방기중 편. 『식민지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해안.
- 권혁범. 2000, 『반공주의의 회로판 읽기』,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
- 기모토 다케시. 2010, 『총력전의 이윤배반』,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No. 23.
- 김귀옥. 2007, 『남북 이산가족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 《분단과 전쟁의 결과: 한국과 독일의 비교》, 2007.10.19~20, 역사문제연구소.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 김동춘. 1997, 『한국 자본주의와 지배질서—안보국가, 시장, 가족』,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 _____. 2000, 『전쟁과 사회』, 돌베개.
- _____. 2006, 『한국의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citizenship)—한국전쟁, 초기 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하에서 ‘국민됨’과 시민권』, 《경제와 사회》, 제70권(2006 여름).
- _____. 2011,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경제와사회》, 제89호(2011 봄).
-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선인.
- 김진환. 2011, 『빨치산 또 하나의 전쟁』,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 김호철. 2006, 『군 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위원회, 『군 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2006.11.28.
- 문형래. 2009. 『법에 내재된 정치와 폭력에 관한 연구—유신체제의 형성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2004, 『1930년대 후반 조선에서의 사상 통제정책』,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 박원순. 1989, 『국가보안법연구 1—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 박정석. 2003, 『상이군인과 유가족의 전쟁 경험』, 표인주 외. 2003,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도서출판 한울.
- 박종덕. 2007,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현황과 과제』, 『과거사 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07.11.28.
- 박홍규. 1996. 『개발독재와 인권—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

- 권침해], 《민주법학》, 10호.
- 백낙청. 1994,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비.
- 벤야민, 발터. 2008,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옮김. 길.
- 아감벤, 조르주. 2004, 『호모 사케르—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
- _____. 2009,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 아렌트, 한나. 1999, 『폭력의 세기』, 김정환 옮김. 이후.
- 오웰, 조지. 2003, 『1984년』, 민음사.
- 윤재수. 1983, 「연좌와 연좌제」, 《석당논총》, 제3집.
- 이규정. 2002, 『숨겨진 전쟁, 그리고 진실과 국익사이: 북파공작원—조국은 우리를 버렸다』, 한국언론정보학회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북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특수임무자 심문규 이종간첩 사건」, 『2008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 _____. 2009a, 『국민보도연맹사건진실규명결정서』.
- _____. 2009b,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기술증언 보고서, 영천지역 조사팀』.
- 전명혁. 2011,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국가보안법 사건 연구-11.22 사건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1호, 2011.12.
- 천주교인권위원회. 2002, 『인혁당 재건위사건—재심청구/상고·항소이유서 자료집』.
- 한국도시연구소. 1998, 『철거민이 본 철거—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 한성훈. 2012, 「‘사찰’ 국가의 인권침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역사비평》, 100호, 2012년 가을.
- 허시, 허버트. 2009,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강성현 옮김. 책세상.
- 曾薰慧·藏汝興. 2007, 「적기(異己)쓰기—50년대 백색테러시기 비침의 상징분석」, 박강배 옮김. 《제노사이드연구》, 제2호.

-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and Loic Wacquant. 1993,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ias, Norbert. 1988, “Violence and Civilization: The State Monopoly of Physical Violence,” Keane, John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Verso.
- Elias, Robert. 1997, “A Culture of Violent Solutions,” Turpin, Jennifie and lester R.

- Kurtz (ed). *The web of Violence: From Interpersonal to Global*,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altung, Johan. 1975, "Peace: Research, Education, Action," Vol. 1: *Essays in Peace Research*, Copenhagen: Christian Ejlers.
- Giddens, Anthony. 1987,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ntze, Otto. 1975,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F. Gilbert, ed.,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 1975(John Hall ed. 1994, *The State: Critical Concept 1*, London: Routledge.
- Joas, Hans. 1999, "The Mordenity of War: Modernization Theory and the Problem of Violence," *International Sociology*, December 1999.
- Kovel, Joel. 1994, *Red Hunting in the Promised Land: Anticommunism and the Making of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Lasswell, Harold. 1997, *The Garrison State*.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originally 1937.
- Raskin, Marcus. 1976, "Democracy versus the National Security Stat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40, No. 3, pp. 189~220.
- Ron, Robin. 2001,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Culture and Politics in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itt, Carl. 2005, *Political Theology: Four Chapters 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7,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w, Martin. 2003, *War and Genocide: Organized Killings in Modern Society*, London: Polity Press.
- Tilly, Charles. 1986,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Evans, Peter·Rueschemeyer, Dietrich·Skocpol, Theda. 1986,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pin, Jennife·lester R. Kurtz(ed). 1997, *The web of Violence: From Interpersonal to Global*,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Abstract ◆

South Korea's State Violence and National Division:
Act of Violence against the 'Outsiders' in a Habitualized Civil War

Kim, Dong-Choon

The national divis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just an extraordinary rel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but a state of war or de facto war both for South and North Korea. The national division is a ruling system which have conditioned structural or physical violence on those who were situated at the 'periphery of two states, anti-system activities and the separated families. Those outsiders have been the targets of everyday observation and, in case of state emergency, violence. The national division left many families separated not only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but in Japan. These separated families became the victims of state violence because their situation created a fertile resource of fabrication of espionage for the military dictators. When we understand the nation division on this perspective, national reunification would presuppose a peace by South Korea' social integration or healing the victims of state violence.

Keywords: national division, state violence, outsider, cold war, family, peace, unification